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4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4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3.(월)	담당부서	석탄광물산업과
담당과장	임형진 과장(044-203-5260)	담 당 자	박희영 사무관(044-203-5263)

「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」 개정안 1.4(화) 국무회의 통과

- 광업 분야 소기업 광해방지 비용 부담 줄어든다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: 문승욱, 이하 산업부)는 **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**을 **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**하는 내용의 **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**(이하 '광산피해방지법') **시행령 개정안**이 **'22.1.4(화) 국무회의**에서 **의결**(공포 후 즉시 시행) 되었다고 밝힘

□ 그간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%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,

○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**광업 기업의 재정여건**과 **광산개발 규모*** **등을 고려**하여 부과 비율을 **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**하고자 함

*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

○ 구체적으로 부과 비율을 **소기업**은 **당초 30%에서 20%로 인하**하고, **중기업**은 당초 **30% 유지, 대·중견·공기업**은 **당초 30%에서 40%로 인상**하였음

* 기업 분류 기준 :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,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, 그 밖의 기업(대·중견·공기업)

□ 금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분야 **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**를 통해 **광해방지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
○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**대·중견·공기업**에 대해서는 **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**를 통해 **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**하고자 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박희영 사무관(☎ 044-203-52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